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1
----------	-----

제출연월일 : 2007. 10.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7. 10. 5. ~ 10. 23.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충청남도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와 시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보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제6조 (조직) ①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수도권에 두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시·도회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시·군·구회를,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제16조 (재정)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보조금 조례」

제4조 (보조대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분할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1. 23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29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0. 30

다. 상 정 일 자 :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11. 23)

상정, 질의,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응)

1. 제안이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은

- 총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를,
- 제3조는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책무를,
- 제4조는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제5조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6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는 공포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호국정신 함양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51
----------	-----

제안연월일 : 2007. 11.
23.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지원)중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을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p><u><신설></u></p>	<p>제5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u>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u>